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9. 3.(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8. 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8. 8

라. 상정일자 : 2014. 9. 3(제218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장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 용자 규모의 적정 여부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 상위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를 의무화 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9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며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용자시 용자대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기금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통합관리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임을 감안할 때 안 제10조에서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영훈 위원 >

- 통합관리기금의 기한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 시행령에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예정인 시행령에는 5년 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다른 기금들도 다 변경해야 하나?

→ 동일하게 적용됨. 14개중 9개는 이렇게 기한을 설정해야 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차준택, 유일용, 신영은, 이영훈, 허준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금”을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
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제1항 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을 “기금”으로, “있다

고”를 “있다고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유자금이
라 함은”을 ““여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금 등이”를 “기금 등의”로,
“위원회”를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이자율”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 호에 정한 자로”를 “각 호
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용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결산)”을 “(관리기금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결산”을 “관리기금결산”으로 한다.

제9조 중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를 “운용·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여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용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4. 기타 수입금	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각 기금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	

의 용자

2.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 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 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

----- 기금 -----

----- 있다고 제6조에 따른 -----

-----.

② ----- “여유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생략)
2. 기타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여유자금

제5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 6. (생략)
7. 기타 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제5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 제4조에 따라 -----
----- 1개월
-----.

② -----
-----기금 등의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
----- 이자율-

-----.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③ ----- 1명-----
1명----- 9명 -----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생략)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신설>

제7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운용관 및

-----.

-----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 위촉하는 사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

관리기금운용계획-----.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기금결산) ① 관리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용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기금결산) ① -----
----- 관리기금결산 -----
-----.

② 삭제

제9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운용·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

제10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 시행에

-----.